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2. 조치일 : 2020. 1. 23.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내규「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상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고위험 고객은 1년, 중·저위험 고객은 3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경과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대상 금융거래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확인을 재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대면방식으로만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정보 갱신 등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확인 재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의 고객정보 갱신을 지속적인 고객확인 방법에 포함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기 위하여 ◎개의 의심거래 추출기준(Rule)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동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추출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는 대체거래임에도 고객 요청에 의해 현금 처리한 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 절차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를 고객요청에 따라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 내용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3)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거래 등을 전산처리의 편의성 등에 따라 전산상 현금거래로 처리한 후 사후적으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이 과다하여 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거래가 아닌 거래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으로 추출되지 않도록 해당 전산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